

의안번호	2213684
의 퇴 인	최민희의원
회 답 일	2025. 12. 10.
추 계 번호	25B567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변경하고 위원 수 및 업무를 확대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2억 3,600만원(연평균 16억 4,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분쟁조정부 구성 (안 제44조의19)	1,931	1,484	1,560	1,607	1,655	8,236	1,647

주: 1.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쟁조정부 위원 15명 증원, 지원 인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5명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분쟁조정부의 위원 및 지원인력의 수, 회의개최 횟수,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4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4조의18(투명성 센터 설치 등)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7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의무규정
3	안 제44조의19(분쟁조정부)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u>제44조의 13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u> (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함.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위원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제2항)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보도·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u>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일부 분쟁을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맡겨 조정하게 할 수 있음(제3항)</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4조의16(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와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수,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2	안 제44조의18(투명성센터 설치 등)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 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 소재지, 상세 업무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3	안 제44조의19(분쟁조정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 변경, 위원 수 및 업무 확대(안 제44조의19)
 -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명칭을 분쟁조정부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확대(현행: 5명 이하의 위원 → 개정안: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하며, 조정의 대상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분쟁조정부 구성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851건으로, 연 평균 1,600여건을 처리하였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5. 11.)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3	3.2	3.3	3.3	3.3	3.3	3.3

[표 2] 최근 3년(2022~202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연 도	합 계	접수처리								사무처 답변 등
		소 계	조정전 합 의	조정결정	정보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¹⁾	
2022	1,802	551	13	0	118	285	33	26	76	1,251
2023	1,540	685	18	0	101	423	29	28	86	855
2024	1,509	632	12	0	131	294	43	71	81	877
합 계	4,851	1,868	43	0	350	1,002	105	125	243	2,983

주 1) 기타는 조정의 거부 등 건수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부의 위원 수 및 업무를 확대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증가할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분쟁조정부 위원 수 확대(현재보다 4배 확대) 및 이에 따른 지원인력 증원을 위한 수당 및 인건비, 직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운영비,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위원 수	○ 5명	○ 20명으로 가정 ¹⁾
위원회 구성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 민간위원 4명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5명 ○ 민간위원 15명
지원 인력	○ 5명(팀장 1명, 팀원 4명)	○ 20명(팀장 4명, 팀원 16명) ²⁾
조정회의	○ 연 22~24회 개최	○ 연 2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주: 1) 개정안은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

2)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쟁조정부의 위원수(20명)를 확대하는 경우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위원 5명) 지원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5명(팀장 1명, 팀원 4명)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직원 15명(팀장 3명, 팀원 1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개정안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5명(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조정회의의 경우 연 22~24회 개최함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지원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5명(팀장 1명, 4~6급 팀원 4명)이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연 인건비는 팀장 105백만원, 팀원(5급 기준) 74백만원 수준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운영 중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분쟁조정부 위원 수 확대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회의참석 수당(안전검토비 포함) 1억 800만원/연
 - 회의참석 수당(안전검토비 포함): 30만원* × 15명(증원 인원) × 24회 = 108백만원
*회의참석수당 10만원 + 안전검토비 20만원
 - 회의참석수당의 단가는 추계기간동안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5명 증원 인건비²⁾)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부의 위원수를 확대(20명)하는 경우,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명) 지원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5명(팀장 1명, 팀원 4명)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직원 15명(팀장 3명, 팀원 12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가정
 - 팀장 3명 증원: 105백만원 × 3명 = 316백만원
 - 팀원 12명 증원: 74백만원 × 12명 = 885백만원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직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운영비) 직원 15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및 운영비를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

2)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단가

(단위 : 천원)					
구분	연봉 및 제수당 ①	법정부담금 ②	1인당 인건비 (①+②)	인원	총인건비
팀장급	89,037	16,231	105,268	3	315,804
직원(5급)	62,020	11,719	73,739	12	884,868

주: 법정부담금 : 법정퇴직금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자산취득비: 177백만원(1회)
- 공공요금 등 운영비: 51백만원/연
- 증원 인원이 사용할 사무공간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입주 청사³⁾ 내 가용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사무실 운영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5] 직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집기류	PC	900,000	15	13,500,000
	모니터	200,000	15	3,000,000
	프린터	300,000	6	1,800,000
	TV	750,000	6	4,500,000
	테이블	850,000	6	5,100,000
	케비닛	400,000	13	5,200,000
	복사기	3,000,000	2	6,000,000
	책상(임원용)	1,000,000	3	3,000,000
	의자(임원용)	500,000	3	1,500,000
	책상(직원용)	330,000	12	3,960,000
	의자(직원용)	280,000	12	3,360,000
	서랍	180,000	15	2,700,000
	파티션	700,000	15	10,500,000
	녹음전화기	50,000	15	750,000
	영상장비(회의실)	2,500,000	1	2,500,000
	음향장비(회의실)	10,000,000	1	10,000,000
	노트북(회의실)	1,500,000	5	7,500,000
	테이블(회의실)	5,000,000	1	5,000,000
	의자(회의실)	230,000	11	2,530,000
	소계			92,400,000
라이선스	MS	265,000	15	3,975,000
	한글	225,000	15	3,375,000
	PMS	35,000	15	525,000
	백신	25,000	15	375,000
	GW	130,000	15	1,950,000
	소계			10,200,000
망분리	서버	35,000,000	1	35,000,000
	스토리지	25,000,000	1	25,000,000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0,000,000	1	10,000,000
	라이선스	300,000	15	4,500,000
	소계			74,500,000
합계				177,100,000

주: 1. 부서 3개소 및 회의실 1개소 증설 기준

2. 회의실 : 분쟁조정부 회의실(음향설비 및 회의용 노트북 설치) 및 일반 회의실

3. 단가는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 기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표 6]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경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내용	산출내역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300,000원 * 12월	3,600,000
	전기료	500,000원 * 12월	6,000,000
	전용회선 이용료	500,000원 * 12월	6,000,000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인테리어	10,000,000원 * 1식	10,000,000
	사무실 칸막이	10,000,000원 * 1식	10,000,000
	네트워크 등 통신시설	5,000,000원 * 1식	5,000,000
	출입통제 등 보안시설	5,000,000원 * 1식	5,000,000
	회의실 설비	5,000,000원 * 1식	5,000,000
합 계			50,600,000

주: 단가는 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 기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분쟁조정부 조정의 대상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조치 및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추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서버 구매 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 반영
 - 시스템 개발비: 213백만원
 - 서버(H/W) 구매(2EA): 50백만원 x 2EA = 100백만원
 -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에 따라 10% 적용⁴⁾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는 2027년 이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⁵⁾
 -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분	평균임금(월)	인원	개발 기간	소계
IT PM	9,145,473	1	5	45,727,365
시스템SW 기술자	6,099,042	3	5	91,485,630
IT지원 기술자	5,058,021	3	5	75,870,315
합계				213,083,310

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4) 효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효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효율(10~15%)을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년 개정판)」)
- 5)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 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변경하고 위원 수 및 업무를 확대할 경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2억 3,600만원(연평균 16억 4,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분쟁조정부 위원 증원 관련 회의참석수당	108	108	108	108	108	540	108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 직원 증원 관련	1,510	1,376	1,421	1,467	1,514	7,287	1,457
인건비	1,280	1,322	1,366	1,411	1,457	6,836	1,367
자산취득비	177	—	—	—	—	177	35
운영비	53	54	55	56	57	274	55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13	—	31	32	33	409	82
합 계	1,931	1,484	1,560	1,607	1,655	8,236	1,647

- 주: 1.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쟁조정부 위원 15명 증원, 지원 인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5명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분쟁조정부의 위원 및 지원인력의 수, 회의개최 횟수,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쟁조정부 위원 15명 증원, 지원 인력(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 15명 증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분쟁조정부의 위원 및 지원인력의 수, 회의개최 횟수,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